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성 북 구
(감사담당관)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9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4년 6월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의무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반부패·청렴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(안 제5조 ~ 제6조)
- 라. 청렴정책자문협의회 설치(안 제7조 ~ 제12조)
- 마. 청렴도 조사 및 교육 (안 제13조 ~ 제15조)
- 바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- 사. 구정 청렴시책사업 관련 포상 등(안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
- 1) 청렴정책자문협의회 설치 : 자치행정과 협의완료
- 2)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: 홍보전산과 협의완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 : 2024. 4. 18 ~ 5. 8. (20일간)

접수 의견 없음

- 2)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

- 3)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미침부사유서 첨부

- 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인권 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부패 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 → 반영

- 위원 해촉,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 (안 제9조, 제10조)

성별 영향평가 결과 : 개선권고 → 반영

- 협의회 구성 시, 성별 고려 사항 추가 (안 제8조)

아동 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"공직자"란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"구"라 한다) 및 산하 기관에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
나. 투자·출자·출연기관 등의 임직원

2. "투자·출자·출연기관 등"이라 함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구가 설치한 공사·공단 및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에서 출자·출연한 단체·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직자의 청렴 의무)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 및 품위 손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반부패·청렴 종합추진계획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

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반부패· 청렴 종합추진계획(이하 ‘종합계획’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
2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
3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
4.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·추진과제
5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시행 등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교육 및 홍보 사업
2. 청렴도 평가·조사
3. 청렴 문화 체험·실천 관련 사업
4.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·설문조사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청렴정책자문협의회의 설치) 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종합계획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정책자문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제안을 할 수 있다.

1.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
3. 공사 및 용역의 관리·감독, 보조금 지원, 인·허가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, 협의회의 위원은 반부패·청렴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

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1조(협의회 운영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 업무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⑤ 정기회의는 연 2회에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5일 전 까지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⑦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의 일시 및 장소

2. 출석위원

3. 자문내용과 자문결과
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협의회 수당)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청렴정책회의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청렴정책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4조(청렴도 조사) 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

2.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

3. 민원업무 분야
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

제15조(청렴교육 및 홍보 등)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.

제16조(협력체계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등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7조(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)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, 소속,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·이용되어야 한다.

제18조(포상 등)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
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비용발생 요인

- 청렴정책자문협의회 회의 수당 등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4. 작성자

감사담당관 정 표 근